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7월 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KODEX삼성그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정정사유

- 이익금 초과 분배 조항 분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 주요투자위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나. 특수위험	(신 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 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논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 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추 가)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
14. 투자신탁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추 가) 가. 투자신탁분배금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3) (생 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추 가)	가. 이익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나. 투자신탁분배금 (1) 집합투자업자는 가.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가. 이익분배'로 조문 이동 및 법개정사항 반영) (4)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	업데이트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